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291호)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639호)

2021.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지 민

목 차

I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2109291)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운영비용 지원(안 제16조)	2
※ 참고자료:	
1.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관련 박재호의원안, 박주민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조문대비표	7
2. 전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현황	9
II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2109639)	15
1. 제안경위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5
3. 검토의견	16
가. 교통수단의 범주에 궤도·삭도를 포함(안 제2조)	16
※ 참고자료:	
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23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24
3. 전국 궤도 현황 (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 2021.6.기준)	26
4. 삭도 현황 (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 2021.6.기준)	28

I. 신영대의원 대표발의(2109291)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1. 4. 2.

다. 회 부 일 : 2021. 4.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맡겨놓다 보니 지역별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환경에 차이가 크고,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도 제약받는 실정임.

이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광역지자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운행은 물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연계 및 활용을 증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항·제6항).

3. 검토의견

가.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운영비용 지원(안 제16조)

1) 개정안의 내용

안 제16조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를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국가 또는 도(道)가 필수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생략)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 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 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 ----- ----- --- <u>설치하여야 한다.</u>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u>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경우에는</u>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 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u>설치</u> <u>할 수 있다.</u>	③ ----- ----- <u>관할</u> ----- ----- ----- ----- ----- <u>설치</u> <u>하여야 한다.</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u>확보</u>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u>설치</u> 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u>지원</u> 할 수 있다.	⑥ ----- ----- <u>확보</u> 및 <u>운행</u> 또는----- <u>설치·운영</u> ----- ----- <u>지원</u> 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2) 국토교통부 의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군 및 도의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운영비)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검토의견

가)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현행 제16조¹⁾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와 운행자의 연계를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 ⑧ (생략)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제10조 제2항과 제3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임.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와 교통약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콜센터’ 형태²⁾로 운영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를 크게 증진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2021년 8월 현재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시·군·도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충청북도 역시 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점³⁾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16조제3항은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또는 별도의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복수의 시·군 이동지원센터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16조제2항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2) 대부분 외부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3) 충북도청에 따르면, 8월 중 충청북도가 제출할 예정인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동지원센터 설립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9월에 도의회에서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임.

통합 운영 관련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2건[박재호의원안(의안번호 2103258), 박주민의원안(의안번호 2108699)]이 현재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⁴⁾ 2020년 11월 17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재호의원안을 논의하였으나,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지역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

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자금 지원 의무화

현행 제16조제6항⁵⁾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와 시·군 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시·군 단위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 및 [별표2] 제71호⁶⁾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장애인

4) 참고자료: 3개 개정안(박재호의원안, 박주민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조문대비표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

특별운송사업(운영비)’을 제외하고 있음.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자금은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에 해당하므로, 국비 지원 근거를 두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참고1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관련 박재호의원안, 박주민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조문대비표

현행	박재호의원안	박주민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생략)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관할-----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설치하여야 한다. ③ ----- ----- ----- -----관할-----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설치하여야 한다. ③ ----- ----- ----- -----관할----- -----설치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 또는 도 (道)는 제1항에 따 른 특별교통수단 의 <u>확보 또는 제2 항에 따른 이동지 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⑥ ----- ----- ----- --- <u>확보 또는 제2 항에 및 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센 터의 설치·운영</u> --- ----- <u>지원할 수 있다.</u>	⑥ ----- ----- ----- --- <u>확보 또는 제2 항에 따른 이동지 원센터의 설치와 운영</u> ----- ----- <u>지원하여 야 한다.</u>	⑥ ----- ----- ----- --- <u>확보 및 운행 또는 제2항에 따 른 이동지원센터 의 설치·운영</u> ---- ----- <u>지원하 여야 한다.</u>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참고2

전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현황

구분		운영방식	위탁기관
서울특별시		위탁운영	서울시설공단
부산광역시		위탁운영	부산시설공단
대구광역시		위탁운영	대구시설공단
인천광역시		위탁운영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		위탁운영	광주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위탁운영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울산광역시		위탁운영	(사단법인)울산장애인 복지서비스지원협회
세종특별자치시		위탁운영	사)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	광역센터 (운영시)	자체	
	수원시	위탁운영	수원도시공사
	성남시	위탁운영	성남시내버스(주) 택시사업부
	의정부시	위탁운영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안양시	위탁운영	안양도시공사
	부천시	위탁운영	부천도시공사
	광명시	위탁운영	광명도시공사
	평택시	위탁운영	평택도시공사
	동두천시	위탁운영	동두천모범운전자회
	안산시	위탁운영	안산도시공사
	고양시	위탁운영	고양도시관리공사
	과천시	위탁운영	(사)과천시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	위탁운영	구리도시공사
	남양주시	위탁운영	삼육재단
	오산시	위탁운영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시흥시	위탁운영	시흥도시공사
	군포시	위탁운영	군포도시공사
	의왕시	위탁운영	의왕도시공사
	하남시	위탁운영	하남시장애인연합회
	용인시	위탁운영	용인도시공사
	파주시	위탁운영	파주도시관광공사
	이천시	위탁운영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구분		운영방식	위탁기관
	안성시	위탁운영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	위탁운영	김포도시관리공사
	화성시	위탁운영	화성도시공사
	광주시	위탁운영	광주도시관리공사
	양주시	위탁운영	양주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	위탁운영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여주시	위탁운영	여주도시관리공단
	연천군	위탁운영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가평군	위탁운영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양평군	위탁운영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
강원도	광역센터 (운영시)	위탁운영	(주)케이티아이에스
	춘천시	위탁운영	봄내콜이동지원센터
	원주시	위탁운영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
	강릉시	위탁운영	개인택시강릉시지부
	동해시	위탁운영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 강원도지부 동해시지회
	태백시	위탁운영	(사)강원도장애인복지회(태백장애인근로사업장)
	속초시	위탁운영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삼척시	위탁운영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
	홍천군	위탁운영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홍천군지회
	횡성군	위탁운영	(사)강원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횡성군지부
	영월군	위탁운영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영월군지부
	평창군	위탁운영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정선군	위탁운영	정선군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철원군	위탁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철원군지회
	화천군	위탁운영	(사)화천군장애인연합회
	양구군	위탁운영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양구군지회
	인제군	위탁운영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인제군지회
	고성군	위탁운영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고성군지회
	양양군	위탁운영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강원도협회양양군지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양양군지회
충청북도	광역센터 (운영시)		
	청주시	위탁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주시	위탁운영	(사)행복천사

구분		운영방식	위탁기관
	제천시	위탁운영	지체장애인협회
	보은군	위탁운영	(사)충북지체장애인협회 보은군지회
	옥천군	위탁운영	(사)충북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
	영동군	위탁운영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영동군지회
	증평군	위탁운영	(사)충북지체장애인협회 증평군지회
	진천군	위탁운영	(사)충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
	괴산군	위탁운영	괴산군장애인연합회, 모범운전자괴산지회
	음성군	위탁운영	(사)음성군장애인복지관
	단양군	위탁운영	음성군장애인연합회
충청남도	광역센터 (운영시)	위탁운영	단양군사회복지협의회
	천안시	위탁운영	주식회사케이티아이에스
	공주시	위탁운영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
	보령시	위탁운영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공주시지회
	아산시	위탁운영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
	서산시	위탁운영	아산장애인단체연합회
	논산시	위탁운영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남협회 서산시지회
	계룡시	위탁운영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
	당진시	위탁운영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
	금산군	위탁운영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
	부여군	위탁운영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금산군지회
	서천군	위탁운영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여군지회
	청양군	위탁운영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천군지회
	홍성군	위탁운영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
	예산군	위탁운영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충남협회홍성군지회
	태안군	위탁운영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
	태안군	위탁운영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태안군지회
전라북도	광역센터 (운영시)	위탁운영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전주시	위탁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군산시	위탁운영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
	익산시	위탁운영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정읍시	위탁운영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
	남원시	위탁운영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김제시	위탁운영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
	완주군	위탁운영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지회

구분		운영방식	위탁기관
	진안군	위탁운영	꿈드래장애인협회 진안군지부
	무주군	위탁운영	사)무주군 지체장애인협회
	장수군	위탁운영	(사)장수군장애인연합회
	임실군	위탁운영	(사)임실군장애인연합회
	순창군	위탁운영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순창군지회
	고창군	위탁운영	(사)한두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 고창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안군	위탁운영	부안군장애인부모회 부안군이동지원센터
전라남도	광역센터 (운영시)	위탁운영	(재)전남복지재단
	목포시	위탁운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부
	여수시	위탁운영	(유)새보람관광
	순천시	위탁운영	(주)남도교통
	나주시	위탁운영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나주시회
	광양시	위탁운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
	담양군	위탁운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
	곡성군	위탁운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
	구례군	위탁운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
	고흥군	위탁운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고흥군지회
	보성군	위탁운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보성군지회
	화순군	위탁운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장흥군	위탁운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
	강진군	위탁운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강진군지회
	해남군	위탁운영	개인택시
	영암군	위탁운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
	무안군	위탁운영	(사)무안군장애인협회
	함평군	위탁운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
	영광군	위탁운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장성군	위탁운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성군지회
	완도군	위탁운영	전남개인택시 완도군지부
	진도군	위탁운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신안군	위탁운영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지부
경상북도	광역센터 (운영시)	위탁운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포항시	위탁운영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경주시	위탁운영	경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구분		운영방식	위탁기관
	김천시	위탁운영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안동시	위탁운영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	위탁운영	구미시설공단
	영주시	위탁운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
	영천시	위탁운영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
	상주시	위탁운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
	문경시	위탁운영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경산시	위탁운영	경산교통(주)
	군위군	위탁운영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
	의성군	위탁운영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
	청송군	위탁운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영양군	위탁운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양군지회
	영덕군	위탁운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
	청도군	위탁운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
	고령군	직영	
	성주군	위탁운영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
	칠곡군	위탁운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
	예천군	위탁운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예천군지회
	봉화군	위탁운영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
	울진군	위탁운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울릉군	위탁운영	울릉택시
경상남도	광역시(운영시)	위탁운영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창원시	위탁운영	창원시설관리공단
	진주시	위탁운영	세화택시, 동진택시
	통영시	위탁운영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통영시지회
	사천시	위탁운영	(합)콜7000택시 (주)에스엠택시
	김해시	위탁운영	김해교통약자콜택시
	밀양시	위탁운영	대광택시(주)
	거제시	위탁운영	거제택시
	양산시	위탁운영	(재)양산시복지재단
	의령군	위탁운영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의령군지회
	함안군	위탁운영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안군지회
	창녕군	위탁운영	(주)경일교통/ (유)영산택시
	고성군	위탁운영	(사)경남지체장애인 고성군지회

구분		운영방식	위탁기관
	남해군	위탁운영	남해군장애인연합회
	하동군	위탁운영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
	산청군	위탁운영	산청콜택시
	함양군	위탁운영	(합)함양콜택시
	거창군	위탁운영	(주)거창80번택시
	합천군	위탁운영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합천군지회
제주특별자치도		위탁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자료: 국토교통부

II. 문정복의원 대표발의(2109639)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문정복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 2021. 4. 21.

다. 회 부 일 : 2021. 4.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궤도 및 삭도(모노레일 및 케이블카)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전국 97개 업체, 201개 기수 중 2개를 제외한 궤도 및 삭도의 주요 목적은 사람의 운송임.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에 관한 현행 법에 궤도가 포함되지 않아 불편함을 초래함.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의 “교통수단”에 궤도와 삭도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3. 검토의견

가. 교통수단의 범주에 궤도·삭도를 포함(안 제2조)

1) 개정안의 내용

안 제2조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교통사업자의 정의 규정에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차량·시설·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궤도사업자들에게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2.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설></u>	<u>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차량</u>
<u>라. ~ 바. (생략)</u>	<u>마. ~ 사. (현행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u>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3. ----- ----- -----

말한다. 가. ~ 다. (생략) <신설> 라. ~ 사. (생략) 4. (생략)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 8.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궤도운송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 아. (현행 라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 ----- 「<u>궤도운송법</u>」, 「<u>항공사업법</u>」----- ----- ----- ----- ----- -----. 6. ~ 8. (현행과 같음)
---	---

2)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

가) 국토교통부 의견

대부분의 궤도는 사람을 운송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교통수단’에 포함시켜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다만,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시설은 관광용(스키장용), 주민 이동편의용 등 그 용도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안전기준 등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 또한

관계자들의 충분한 준비 기간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2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한국삭도협회 의견

현행 궤도시설의 대부분은 유명 관광지에서 관람객 운송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교통수단들(버스, 지하철, 철도, 비행기, 선박 등)과는 그 성격이 다름. 따라서 궤도를 교통수단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만,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용이 아닌 대중교통시설로서 궤도를 설치·운영할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검토의견

「궤도운송법」 제2조⁷⁾에 따르면,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노면전차·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고,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케이블카) 궤도의 개념에 포함됨.

7) 「궤도운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5.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궤도시설의 종류

구 분	사 진	내 용
삭도 (케이블카)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
모노레일		고가(高架) 등에 설치한 단일 궤도를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
케이블 철도		경사지 등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차량을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견인시킴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
자기부상 열차		자기력을 이용하여 차량을 궤도 위에 띄워 움직임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
소형 경전철		고가(高架)에 설치한 궤도를 따라 1~4명이 탑승 가능한 무인경량차량을 운행하는 궤도로 PRT*, 궤도택시, 스카이택시 등으로 불림 * PRT: Personal Rapid Transit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처럼 제도를 교통수단에 포함시킬 경우, 제도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동법상 의무들을 부여받게 됨.

- 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탑승설비 등)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제11조)⁸⁾
- ②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제13조)⁹⁾
- ③ 교통약자에게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 편의서비스 제공 의무(제17조)¹⁰⁾

그리고 ① 위반 시에는 동법 제29조¹¹⁾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시정기간 이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9조의2 및 제31조¹²⁾에 따라 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음.

-
- 8)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9)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0)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 11) 제29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를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2) 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31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록 대부분의 궤도시설은 사회 생활에 필수적인 이동이 아닌 관광이 주요 목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대중교통수단들과 차이가 있으나, 매년 5,500만명 이상이 궤도시설에 탑승하고 있고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키용 삭도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2,000만명 이상이 궤도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¹³⁾는 전체인구(5,183만 명)의 약 29.7%인 1,540만명에 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들을 위한 각종 이동편의시설 및 편의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궤도시설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궤도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궤도시설 탑승객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관광용	스키용	전용	합계
2019년	삭도	19,909,050	34,235,722	45,433	54,190,205
	궤도	1,915,586	0	643,768	2,559,354
2018년	삭도	19,257,956	34,066,372	43,647	53,367,975
	궤도	2,760,072	0	149,045	2,909,117
2017년	삭도	18,016,497	36,460,731	50,639	54,527,867
	궤도	3,344,603	0	178,815	3,523,418

자료: 국토교통부

13) 교통약자 유형 :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다만,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궤도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궤도는 용도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안전기준 등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보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1. 교통수단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바. 광역철도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2. 여객시설

-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 아. 광역철도의 역사

3. 도로

-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참고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제12조 관련)

1. 교통수단

대상시설	이동편의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그 밖의 시설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목적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버스	시내버스 (저상형)	○	○	○	○		○		○	○	
	시내버스 (일반형)	○	○	○	○		○		○	○	
	시내버스 (좌석형)	○	○	○	○		○			○	
	농어촌 버스	○	○	○	○		○		○	○	
	마을버스	○	○	○	○		○		○	○	
	시외버스	○	○	○	○		○			○	
철도차량		○	○	○	○	○	○	○		○	○
도시철도차량		○	○	○			○		○	○	○
항공기		○	○	○		○	○	○		○	○
선박		○	○	○	○	○	○	○		○	○
광역철도		○	○	○			○		○	○	○

2. 여객시설

대상시설	이동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로	강토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여객자동차터미널		○	○	○	○	○	○	○	○	○	○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	○	○	○	○	○	○	○	○	○	
도시철도역사		○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	○	○	
광역철도역사		○	○	○	○	○	○	○	○	○	○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점차 블록	유도및 안내 시설	경보및 파란 시설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개찰구	승강장	보안감시 장	여객탑승 교	대기 시설	암부 휴게 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버스정류장	○	○									○	
철도 역사	○	○	○	○	○	○	○	○				○
도시철도 역사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광역철도 역사	○	○	○	○	○	○	○	○				○

3. 도로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지하 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 는 음향신호기
도로	○	○	○	○	○
준용도로	○	○	○	○	○

참고 3

전국 궤도 현황 (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 2021.6.기준)

지역	업체수	업체명	위치	준공일	용도	분류
부산	4	부산중구청	중구	14.04.04		모노레일
		부산동구청	동구	15.05.22	전용	모노레일
		세운철강(주)	영도구	17.09.13	전용	모노레일
		해운대블루라인(주)	해운대구	21.01.22	관광용	모노레일
인천	1	인천교통공사	중구	10.03.01	관광용	모노레일
울산	1	장생포모노레일(주)	남구	18.03.22	관광용	모노레일
세종	1	세종에머슨(주)	세종	10.12.01	전용	케이블철도
경기	4	(재)엘지상록재단	광주시	10.07.01	관광용	모노레일
		포천모노레일(주)	포천시	09.10.24	관광용	모노레일
		(주)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광주시	11.04.20	스키장용	모노레일
		(주)알맥스	연천군	17.05.23	관광용	모노레일
강원	10	(주)하이원추추파크	삼척시	14.10.10	관광용	케이블철도
		한강홍수통제소	홍천군	15.03.01	전용	모노레일 2기
		강원도개발공사	평창군	09.05.01	스키장용	모노레일
		(주)HJ매그놀리아용평호 텔앤리조트	평창군	21.01.08	스키장용	모노레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군	18.08.01	관광용	모노레일
		정선군	정선군	09.09.01	전용	모노레일
		삼척모노레일(주)	삼척시	10.04.01	관광용	모노레일 2기
		화천군	화천군	07.11.06	전용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삼척시	삼척시	07.06.05	관광용	모노레일
		철원군	철원군	07.10.31	관광용	모노레일
충북	5	제천시	제천시	13.01.24	관광용	모노레일
		탄지영농조합	제천시	16.05.23	관광용	모노레일
		충주시	충주시	15.12.10	관광용	모노레일
		영동군	영동군	17.01.11	관광용	모노레일
		단양군	단양군	17.08.11	관광용	모노레일
충남	2	금강홍수통제소	금산군	14.07.01	전용	모노레일
		서대산약용식물원	금산군	15.09.30	관광용	모노레일
전북	2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	15.04.14	관광용	모노레일
		무주군	무주군	14.12.01	관광용	모노레일
경북	8	예천군	예천군	18.07.30	관광용	모노레일
		영양군	영양군	17.07.13	관광용	모노레일
		문경시	문경시	07.11.01	관광용	모노레일 2기
		울릉군	울릉군	08.06.28	관광용	모노레일 2기
		석산생태농원	군위군	16.05.09	관광용	모노레일

지역	업체수	업체명	위치	준공일	용도	분류
		군위군청	군위군	16.07.07	관광용	모노레일
		구미시	구미시	16.11.30	관광용	모노레일
		영천시	영천시	17.05.22	관광용	모노레일
경남	7	고견사	거창군	14.04.25	전용	모노레일
		함양군	함양군	17.08.04	관광용	모노레일
		(주)창원컨트리클럽	창원시	15.12.17	전용	케이블철도 2기, 모노레일
		통영관광개발공사	통영시	19.05.02	관광용	모노레일
		창원시	진해구	09.03.27	관광용	모노레일
		합천군	합천군	18.01.09	관광용	모노레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	18.02.02	관광용	모노레일
전남	6	나주시	나주시	16.04.07	관광용	모노레일
		(주)땅끝모노레일	해남군	05.12.19	관광용	모노레일 2기
		순천시	순천시	17.03.29	관광용	경전철
		영산강홍수통제소	화순군	16.08.30	전용	모노레일
		완도모노레일(주)	완도군	17.02.23	관광용	모노레일
		구례군	구례군	19.04.01	관광용	모노레일
합계	51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 4

삭도 현황 (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 2021.6.기준)

지역	업체수	업체명	위치	준공일	용도
서울	1	한국삭도공업(주)	중구	62.05.12	관광용
부산	2	유창삭도(주)	동래구	66.09.26	관광용
		(주)송도해상케이블카	서구	17.04.28	관광용
대구	3	대덕개발(주)	남구	74.09.18	관광용
		(주)이월드	달서구	92.10.01	관광용
		(주)한림팩	동구	85.10.01	관광용
인천	1	해강개발(주)	강화군	18.06.08	관광용
광주	1	(주)무등과크리조트	동구	78.04.01	관광용
경기	10	과주디엠지곤돌라(주)	과주시	20.01.17	관광용
		(주)에스엔아이코퍼레이션	광주시	08.12.01	스키장용
		동일삭도(주)	과천시	91.05.01	관광용
		한국방송공사	과천시	91.07.01	전용
		선진종합(주)	남양주시	93.12.01	스키장용
		(재)송암스페이스센터	양주시	06.08.01	관광용
		미래개발(주)	용인시	88.02.01	스키장용
		삼성물산(주) 에버랜드리조트	용인시	88.06.01	관광용
		지산리조트(주)	이천시	96.12.01	스키장용
		(주)예지실업	포천시	88.12.01	스키장용
강원	15	알프스리조트(주)	고성군	85.03.01	스키장용
		(주)동효	속초시	03.09.01	관광용
		에이치디씨리조트(주)	원주시	06.03.01	스키장용
		(주)강원랜드	정선군	06.10.31	스키장용
		지에스건설(주)	춘천시	02.11.01	스키장용
		(주)HJ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	평창군	87.12.01	스키장용
		휘닉스중앙(주)	평창군	95.12.01	스키장용
		(주)소노인터내셔널	홍천군	94.11.01	스키장용
		신안종합리조트(주)	횡성군	95.11.01	스키장용
		강원도개발공사	평창군	09.07.01	스키장용
		(주)오투리조트	태백시	08.11.26	스키장용
		삼척시	삼척시	21.03.30	관광용
		태백시	태백시	12.06.01	관광용
		(주)한성에스엘씨	화천군	15.09.02	전용
		강원도청	정선군	16.01.20	전용
충북	2	청풍로프웨이(주)	제천시	19.04.01	관광용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증평군	19.07.23	관광용
전북	3	(주)무주 덕유산리조트	무주군	90.12.01	스키장용
		(유)양지대둔산삭도	완주군	90.11.16	관광용
		내장산개발(주)	정읍시	80.08.18	관광용
경북	5	울진군	울진군	19.10.25	관광용
		(주)군파크레저	청도군	20.11.24	관광용
		삼봉개발(주)	경주시	97.12.01	관광용

지역	업체수	업체명	위치	준공일	용도
		(주)호텔금오산	구미시	94.04.01	관광용
		울릉군	울릉군	98.06.01	관광용
경남	6	통영관광개발공사	통영시	07.12.01	관광용
		(주)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	밀양시	12.06.29	관광용
		(주)신세계개발	양산시	07.12.01	스키장용
		미타암	양산시	94.09.01	화물용
		스카이라인루지통영(주)	통영시	16.12.12	관광용
		사천시	사천시	18.04.23	관광용
전남	6	추월산보리암	담양군	00.10.17	화물용
		목포시	목포시	07.05.01	화물용
		(주)삼진관광개발	해남군	03.02.01	관광용
		(주)유심천레저산업	여수시	19.07.05	관광용
		목포해상케이블카(주)	목포시	19.09.06	관광용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여수시	14.07.21	관광용
합계	55				

자료: 국토교통부